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15. 3. 3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의안 번호	2620
----------	------

제안이유

- 노후 된 건축물의 옥내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 범위를 마련하여,
- 시민들의 재정부담 완화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선진 수도(복지) 행정 구현

주요내용

- 가. 옥내급수관 지원과 관련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 나. 급수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개량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제정(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수도법제2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관련사업계획서 : 불임

예산수반사항 : 불임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불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옥내급수설비”라 함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 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로)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10. “개량”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37조의 제목“(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을“(옥내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급수설비”를 각각 “옥내급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급수설비”를 각각 “옥내급수설비”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으로 한다.

제3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수도시설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수도시설과장 김 학 민
	담당·팀장 직위·성명	급수계장 김 충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심 경 봉 (행정 203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1 ~ 8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1 ~ 8 (현행과 같음)</p> <p>9. “<u>옥내급수설비</u>”라 함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로)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p> <p>10. “<u>개량</u>”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를 총칭한다.</p>
<p>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u>급수설비</u>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u>급수설비</u>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u>급수설비</u>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u>급수설비</u>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검사결과 <u>급수설비</u>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u>급수설비</u>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u>급수설비</u>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u>급수설비</u>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p>제37조(옥내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p> <p><u>옥내급수설비</u>-----</p> <p><u>옥내급수설비</u>-----</p> <p><u>옥내급수설비</u>-----<u>옥내급수설비</u>-----</p> <p>-----</p> <p>-----</p> <p>②----- <u>옥내급수설비</u> -----</p> <p>-----</p> <p>-----<u>옥내급수설비</u>-----<u>옥내급수설비</u>의 개량-----</p> <p>-----</p> <p>③ ----- <u>옥내급수설비</u>의 개량-----</p> <p>-----</p> <p>-----</p> <p>1. 호 내지 2호 (현행과 같음)</p>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옥내급수 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3. 연면적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